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문경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1 신청 대상

□ 신청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 주소) 문경시 거주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예비)1인 창조기업(붙임 1, 2 확인)
- 입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2018. 11. 28. 이후 사업자등록자)

우대사항	농식품 분야 (예비)1인 창조기업
지역요건 예외사항	접수마감일 기준 타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문경시로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면 센터 사전승인을 통해 입주 신청 가능
예비창업자 의무사항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지원제외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타 직장 4대보험 가입자)

* 단, 센터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가능

2 지원 내용

☐ 입주기간: 2026. 1. 1. ~ 2027. 12. 31.(2년)

* 우수기업은 입주연장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세부 내용
사무공간 무상지원	○ 공동 보육실(1인 전용 사무공간), 회의실 지원 ○ 사무집기(책상, 의자, 사물함) 및 공용 사무기기(프린트기, 팩스, 웹 카메라 등), 유무선 인터넷 지원
교육, 전문가 자문	○ 창업·경영 분야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가 자문 - 아이템 검증/마케팅/세무·회계/지식재산권 등 입주기업 수요 및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자문, 컨설팅
네트워킹, 마케팅/판로개척	○ 1인 창조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 입주·졸업기업 간 간담회, 벤치마킹, 권역별 교류회 등 ○ 전시회 공동관 부스 참가, 유통채널 입점상담회 및 프로모션 ○ 우수 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한 시제품 개발비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5백만원)														
	<지원항목 예시>														
	<table><tr><th>지원분야</th><th>지원항목</th></tr><tr><td>전시회/컨퍼런스</td><td>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컨퍼런스(제품전시, 발표) 참가비, 항공료(이코노미 좌석 기준 항공료의 50% 이내 지원) 등 ※ 사전계약금 및 전시비품 임차비는 지원불가</td></tr><tr><td>시장조사</td><td>시장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사업환경 분석</td></tr><tr><td>브랜드/디자인</td><td>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td></tr><tr><td>홍보/판촉</td><td>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리플릿, 온/오프라인 기사홍보, 제품사진 촬영 및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td></tr><tr><td>시제품 개발</td><td>시제품 외주가공비, 성분분석비(자가품질검사 제외),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장비 활용비, 제품공정/레시피 개발 컨설팅</td></tr><tr><td>인증/지재권</td><td>인증심사비(전통식품품질인증, ISO22000, 벤처기업 등), 선택형사업 선정완료 후 출원한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 ※ 지식재산권 성공보수는 지원불가</td></tr></table>	지원분야	지원항목	전시회/컨퍼런스	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컨퍼런스(제품전시, 발표) 참가비, 항공료(이코노미 좌석 기준 항공료의 50% 이내 지원) 등 ※ 사전계약금 및 전시비품 임차비는 지원불가	시장조사	시장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사업환경 분석	브랜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홍보/판촉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리플릿, 온/오프라인 기사홍보, 제품사진 촬영 및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	시제품 개발	시제품 외주가공비, 성분분석비(자가품질검사 제외),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장비 활용비, 제품공정/레시피 개발 컨설팅	인증/지재권	인증심사비(전통식품품질인증, ISO22000, 벤처기업 등), 선택형사업 선정완료 후 출원한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 ※ 지식재산권 성공보수는 지원불가
	지원분야	지원항목													
	전시회/컨퍼런스	국내·외 전시회 부스비, 컨퍼런스(제품전시, 발표) 참가비, 항공료(이코노미 좌석 기준 항공료의 50% 이내 지원) 등 ※ 사전계약금 및 전시비품 임차비는 지원불가													
	시장조사	시장조사, 소비자 반응조사, 사업환경 분석													
	브랜드/디자인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홍보/판촉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전자카탈로그, 리플릿, 온/오프라인 기사홍보, 제품사진 촬영 및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등													
시제품 개발	시제품 외주가공비, 성분분석비(자가품질검사 제외),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장비 활용비, 제품공정/레시피 개발 컨설팅														
인증/지재권	인증심사비(전통식품품질인증, ISO22000, 벤처기업 등), 선택형사업 선정완료 후 출원한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등) ※ 지식재산권 성공보수는 지원불가														
창업지원사업 연계	○ 기업 맞춤형 대외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3 대상자 선정

☐ 선정규모: 3개사 내외

☐ 선정방법

○ 1차 서면심사: 자격요건 확인

☞ 발표심사 대상자 통지: 2025. 12. 9.(화), 개별통지

○ 2차 발표심사: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한해 발표심사 진행

☞ 심사 일시: 2025. 12. 18.(목) 14:00 ~ 17:00

※ 기업별 세부시간은 별도 안내,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방법: 기업별 15분씩 발표평가(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선정통지: 2025. 12. 19.(금), 선정자 개별통지

□ 평가지표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서면 및 발표평가의 항목과 배점은 동일

평가항목			배점
1	창업자 역량 (30점)	1-1.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20점
		1-2.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점
2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2-1.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점
		2-2. 기술(제품)의 차별성	10점
3	기술성 (20점)	3-1.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점
		3-2. 기술구현의 현실성	10점
4	시장성 (20점)	4-1.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점
		4-2.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0점
5	기타 (10점)	5-1.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점
		5-2.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점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 11. 27.(목) ~ 2025. 12. 8.(월) 18:00까지

□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신청 후 이메일 (mglcenter@daum.net)로 [별첨 1] 입주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

※ 정회원 신청 방법: [별첨 2] 참조

5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1	공통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2			대표자 이력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5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6	사업장 보험가입 여부	여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점 해당 시 제출서류

연번	가점 항목		점수	제출서류	발급기관
1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점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3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성실경영자 확인증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www.rechallenge.or.kr)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 성실경영자)	3점	우수 성실경영자 확인증	

*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점 인정(최대 3점)

6 입주기업 의무사항

- ☐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응하지 않을 시에는 2회 경고 후 퇴거 조치
- ☐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연간 12시간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 선정자는 졸업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전화번호: 054-552-2422, 2322
 - 주소: 경북 문경시 중앙로 280,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별관(침단과학영농실) 2층
 - ※ 센터 개방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http://www.mgstartup.kr>

[붙임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붙임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 직장가입자(타 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 **유예기간** :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